

2012 장애인 교육 여건 현황 및 개선방안

2012.10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민주통합당(경기 고양 일산동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냉혹한 특수교육 현실에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유은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민주통합당

1년 전 이 무렵입니다. 영화 ‘도가니’가 국민의 커다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특수학교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언론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고, 마침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무렵이라 당시 교육감은 국정감사장에 불려나 왔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은 무얼 하는 곳이기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걸까?’ 많은 국민이 원망의 눈초리로 주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광주교육감은 교과부 고위직 간부에 임명된 상태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도가니 사태’ 당시 무책임한 발언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고, 결국 며칠 가지 않아 물러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당시 국감에서는 특수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고, 관심 또한 컸다는 것입니다.

‘도가니’의 파장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법정 정원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특수교사를 배치해 놓고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장애학생들과 부모, 선생님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특수교육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구멍이 나고, 장애학생들과 부모, 선생님들은 안타까움에 다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를 지닌 아이들은 영화 속이 아닌 현실에서 마주해야 합니다. 특히 어른들의 무심함으로 하루에 2~3시간씩 통학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특수학교 아이들, 일반학교에서 중도.중복장애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같이 냉정한 현실 속에 놓인 아이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해 폭행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인 아이들의 엄마들과 만났습니다. 국립특수학교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메어지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위로를 건네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우리 언니 동생 시누이…입니다.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특수교육 현장의 법령 미준수 사항을 발견하고, 크게 나아지지 못한 특수교육 현실을 짚어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책 자료집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은 원인을 찾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과부, 교육청과 특수교육현장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지혜를 빌려주시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저마다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주신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활동가 및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땀과 눈물을 쏟아 오신 고마운 분들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배우게 된 것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에 있건 간에 스스럼없이 함께 어울려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학교,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차 례

I. 특수교육 지원 여건	9
1.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9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12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5
1) 진단·평가	15
2) 정규직 교사 배치	18
3) 영아 전담 특수교사 배치 (장애영아 교육지원)	20
4. 순회교육 지원	23
5.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32
6.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 통학소요시간	38
7.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 개별화교육지원	39
8. 특수학급 배치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41
II. 특수교사 지원 여건	45
1.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45
2. 특수학급 배치 전임 특수교사 성과상여금 등급 현황 분석	52
3.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특수교사 지원	54
III. 장애인 교원 운영 여건	56
1.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	56
2.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	57
IV. 기타	59
1. 특수학교 운동부 운영	59
2. 특수교육보조원 시간외근무 수당 지원	64

표 차례

<표1> 시·도별 특수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11
<표2> 2013년도 시·도별 특수교육교원 가배정정원 현황	12
<표3>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14
<표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적 진단 방법	17
<표5>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안내 현황	17
<표6>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직 교사 배치 현황	20
<표7>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선정 기준	22
<표8>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수 및 교육지원 현황	23
<표9> 특수학급 순회교육 현황	30
<표10>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현황	30
<표11> 일반학급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황	31
<표12> 일반학급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내역	32
<표1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수업지원 순회특수교육 횟수	33
<표14>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특수교육 순회교사 자격 현황	33
<표1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특수교육 순회교사 급별 현황	34
<표16>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특수교육 순회교사 연령 현황	34
<표17> 2012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36
<표18>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1일 왕복 통학시간	39
<표19>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1일 왕복 통학시간	41
<표20-1>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급 지원현황	43
<표20-2>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급 현황	44
<표21> 중등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미이수 기관 현황	48
<표22> 특수교사(재활복지) 자격연수과정 개설 현황	50
<표23> 특수학급 배치 전임교사 성과상여금 등급 내역	54
<표24>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직 교사 인센티브 부여 현황	55
<표25> 시도 교육청별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 비율	57
<표26>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	58
<표27>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전체 예산액	60
<표28>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전체 결산액	60
<표29>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후원금, 학교회계 편성여부	61
<표30>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훈련방법 및 훈련일수	61
<표31>	65

그림 차례

<그림1>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2012. 2.), 교육과학기술부 53

1.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명의 특수교사가 4명 이상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현재 특수교사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장애학생 수는 약 5.1명임.(2012년 8월 기준)

▶ 해외 선진 국가의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
 · 미국(뉴욕주) 3명, 일본(특별지원학교) 1.67명 (2010년 기준), 한국 5.1명 (2012년 기준)

※자료: 국립특수교육원 (2011). 특수교육 실태 국제동향. 및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재구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정정원이 16,831명인데,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는 9,416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법정정원 확보율 편차 심화
 · 전국 평균(55.9%)보다 높은 시·도: 강원 77.3%, 부산 67.7%, 제주 67.1%
 ·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도: 경기 42.8%, 울산 43.8%, 충북 46.1%

▶ 법정정원 미확보로 인해 비정규 교사 양산 심화
 · 시·도별 특수교사 중 비정규직 비율: 경기 31.4%, 전남 16.8%, 서울 1.5%.

- 장애아동 교육은 다른 일반 교육에 비해 더 많은 의지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일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일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 유치원 73.2%, 초등 89.1%, 중등 80.4%

※자료: 안민석의원실(2010). 국정감사 보고자료.

-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일반 학생 수와는 달리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반학생은 매년 20만여명 이상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3천여 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p>▶ 일반학생 수 추이(유·초·중등과정): 8,202,698명('08) → 8,032,671명('09) → 7,823,421명('10) → 7,601,666명('11)</p> <p>▶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이: 71,484명('08) → 75,187명('09) → 79,711명('10) → 82,665명('11) → 85,012명('12)</p>

- 법으로 정한 특수교사 정원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현상 지속 △특수학급 신·증설 시 걸림돌 작용 △기간제 교원 양산 등의 부작용 심화.
- 특히 2012학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수는 배정 인원 대비 30%에 육박함. 기간제 교원은 한시적인 고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특수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

2) 개선방안

- 부족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2,000명씩 특수교사 10,000명 확충 필요.
- 현재의 일반교사 정원 관리 정책으로는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p>▶ 대안 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사 정원을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정원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 2. 별도의 법률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특수교사를 특별 충원하여 일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3) 참고자료

(1) 특수교사 배치기준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시·도별 특수교원 법정정원 확보율(2012년 9월 기준)

<표1> 시·도별 특수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2012.9월 기준. (단위 : 명, %)

시 도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 정원	기간제 교사 수	정원 확보율
서울	2,240	1,389	170	62.0
부산	1,151	779	60	67.7
대구	772	425	70	55.1
인천	1,033	561	69	54.8
광주	564	329	116	58.3
대전	641	327	100	51.0
울산	497	218	52	43.8
경기	3,764	1,612	1,340	42.8
강원	687	531	10	77.3
충북	672	310	74	46.1
충남	970	649	118	66.9
전북	694	412	44	59.4
전남	768	459	105	59.8
경북	752	490	89	65.2
경남	1,384	762	265	55.1
제주	243	163	0	67.1
전체	16,831	9,416	2,682	55.9

(3) 2013년도 시·도별 특수교육교원 가배정정원 현황

<표2> 2013년도 시·도별 특수교육교원 가배정정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학년도 정원	2013학년도 가배정	
		배정정원	전년대비 증감
경기	1,555	1,589	34
서울	1,345	1,345	0
부산	755	807	52
대구	413	416	3
인천	544	548	4
광주	321	351	30
대전	319	330	11
울산	212	212	0
경남	738	743	5
제주	159	159	0
충북	297	297	0
충남	605	605	0
세종	25	32	7
전북	396	406	10
강원	513	514	1
전남	438	438	0
경북	466	505	39
합계	9,101	9,297	196

2.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1) 현황 및 문제점

- 많은 시·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이 매개 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와 위생 시설인 '화장실 대변기'는 거의 100%설치하였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손잡이나 유도 안내시설의 등의 내부시설 및 안내시설은 매우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교육청에 갔을 때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문제가 생김.

- 내부시설(복도 손잡이·승강기 경사로)과 안내시설(점자 블록·유도 및 안내설비·경보 및 피난시설)이 100% 설치된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 두 곳 뿐이었음.
- 시·도 별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낮은 순은 경남(47.6%), 울산·세종(60%), 경북(62.5%), 전북(64%), 서울·광주(66.7%), 대전(73.3%), 충남(78.7%), 전남(81.7%), 경기(83.9%), 인천(86.7%), 부산(90%), 대구(92%), 충북(93.3%), 제주·강원(100%) 으로 나타남.

2) 개선방안

-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은 눈에 보이는 곳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교육 행정기관의 내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과 제도에 맞게 설치해야 함.

3) 참고자료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별표 3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2)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표3>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곳, %)

시도	내부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복도 손잡이 설치청수	승강기 경사로등 설치청수	점자블록 설치청수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청수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청수	
서울(총 12곳)	4 (33.3)	9 (75.0)	10 (83.3)	5 (41.7)	12 (100)	66.7
부산(총 6곳)	6 (100)	5 (83.3)	6 (100)	5 (83.3)	5 (83.3)	90.0
대구(총 5곳)	5 (100)	3 (60.0)	5 (100)	5 (100)	5 (100)	92.0
인천(총 6곳)	3 (50.0)	5 (83.3)	6 (100)	6 (100)	6 (100)	86.7
광주(총 3곳)	2 (66.7)	3 (100)	3 (100)	2 (66.7)	0	66.7
대전(총 3곳)	0	2 (66.7)	3 (100)	3 (100)	3 (100)	73.3
울산(총 3곳)	0	2 (66.7)	3 (100)	2 (66.7)	2 (66.7)	60.0
경기(총 27곳)	18 (67.7)	25 (92.6)	27 (100)	22 (81.5)	21 (77.8)	83.9
강원(총 18곳)	18 (100)	18 (100)	18 (100)	18 (100)	18 (100)	100
충북(총 12곳)	12 (100)	8 (66.7)	12 (100)	12 (100)	12 (100)	93.3
세종(총 1곳)	0	0	1 (100)	1 (100)	1 (100)	60.0
충남(총 15곳)	7 (46.7)	10 (66.7)	15 (100)	14 (93.3)	13 (86.7)	78.7
전북(총 15곳)	10 (66.7)	2 (13.3)	13 (86.7)	11 (73.3)	12 (80.0)	64.0
전남(총 23곳)	23 (100)	2 (8.7)	23 (100)	23 (100)	23 (100)	81.7
경북(총 24곳)	10 (41.7)	9 (37.5)	24 (100)	16 (66.7)	16 (66.7)	62.5
경남(총 21곳)	6 (28.6)	8 (38.1)	17 (81.0)	7 (33.3)	12 (57.1)	47.6
제주(총 3곳)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100
합계 (%) (총 197곳)	58.91	62.27	97.12	82.74	83.43	76.89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 진단·평가

(1) 현황 및 문제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해야 하나 조사 결과,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 보호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의료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해야 하고, 교육감은 의료적 진단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전체 진단서 제출 보호자 중 26.5%에 해당되는 557명만이 진단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지원금액은 평균 79,488원인 것으로 나타남.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선정 및 배치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및 보호자의 의무 등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되어야 하나, 조사결과,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전, 경기, 전북 및 경북 교육청의 경우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의, 취학유예,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및 작성, 보호자의 의무 등을 부분적으로 공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항을 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수교육 지원 과정에서 특수교사와 보호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의, 취학유예, 개별화교육팀 참여 및 작성, 보호자의 의무 등을 공지할 때,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지 업무가 집행될 필요가 있음.

(3) 참고자료

① 법적근거

• 관련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 2012 특수교육운영계획 중

-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의무·무상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의뢰 활성화
 -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안내 및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강화
 -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요구를 판단하는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시·도교육청 조치 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홍보책자 제작 활용 및 홍보 적극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특수교육 관련 기초 정보 제공, 지역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기관 등에 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②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정책 추진 관련 사전 조사 실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요구 조사 실시- 사립유치원 이용 장애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요구 및 지원 방법 등③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 제작 활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를 마련하여 교육지원청, 특수교육기관, 일반학교에 시달④ 구비서류 간소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 담임교사로부터 과도한 구비 서류 요구 금지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치료영역 등 지원내용을 정하기 위해 의사, 치료사, 특수교사 등 포함 |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적 진단 방법

<표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적 진단 방법

(단위 : 건)

시도	의료적 진단 횟수	의료기관에 의뢰 수 (기관에비용지급)	기타 기관에 의뢰 수 (기관에비용지급)	보호자 실시 수 (보호자에게비용지급)
서울	8	0	0	2
부산	0	0	0	0
대구	34	2	0	32
인천	12	1		11
광주	0	0	0	0
대전	2	0	0	2
울산	0	0	0	0
경기	383	255	388	0
강원	51	51	0	0
충북	198	154	2	42
세종	1	1	0	0
충남	46	40	0	1
전북	1	1	0	0
전남	0	0	0	0
경북	57	17	0	0
경남	0	0	0	0
제주	18	0	0	0
계	811(100%)	522(64.4%)	390(48.1%)	90(11.1%)

③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안내 현황

<표5>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안내 현황

시도	특수교육 정의에 대하여 안내	취학 유예에 대하여 안내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안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안내	보호자에 대한 의무 안내
서울	100%	91%	100%	100%	100%
부산	100%	100%	100%	100%	100%
대구	100%	100%	100%	100%	100%
인천	100%	100%	100%	100%	100%
광주	100%	100%	100%	100%	100%
대전	33%	33%	33%	33%	33%
경기	92%	76%	84%	88%	80%
강원	100%	100%	100%	100%	100%
충북	100%	100%	100%	100%	100%
세종	100%	100%	100%	100%	100%
충남	100%	100%	100%	100%	100%
전북	100%	93%	93%	93%	93%
전남	100%	100%	100%	100%	100%
경북	91%	91%	96%	96%	96%
경남	100%	100%	100%	100%	100%
제주	100%	100%	100%	100%	100%

※ 대 전 - 저시력, 동부송촌 및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 미공지

경 기 - 특수교육의 정의 미안내(이천, 포천) / 취학유예 미안내(안양과천, 화성오산, 양평, 이천, 시흥, 포천) /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미안내(부천, 화성오산, 이천, 포천) / 개별화교육 작성 미안내(부천, 이성 및 화성) / 보호자의 의무 미안내(안양과천, 화성오산, 이천, 안성 및 시흥)

전 북 - 취학의무 유예에 대한 미안내(김제) /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미안내(완주) / 보호자의 의무 미안내(고창)

경 북 - 특수교육 정의 및 취학의무 유예 미안내(의성, 울릉) / 개별화교육지원팀,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보호자의 의무 미안내(울릉)

2) 정규직 교사 배치

(1) 현황 및 문제점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학교 및 학생을 지원해야 하나 조사 결과 1개 센터 평균 2.0명의 정규직 특수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관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을 지원해야 하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교사 수가 부족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수행 때문에 학습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지역청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정규직 특수교사가 달리 배치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센터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자료

① 법적근거

• 관련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직 교사 배치 현황

<표6>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직 교사 배치 현황

(단위 : 명)

시도 (센터수)	특수교육지 원센터 배치 정규직 특수교사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교사 1인당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교사 1인당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관할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서울(11)	2.5	907	361	176	50
부산(6)	3.7	973	244	220	66
대구(4)	3	1,076	344	228	74
인천(6)	2.8	797	269	137	46
광주(3)	2.7	911	381	170	61
대전(3)	4	1,029	261	233	63
울산(3)	2	827	551	261	149
경기(25)	2.2	735	313	114	47
강원(17)	1.3	147	123	31	28
충북(11)	1	366	345	91	87
세종(1)	1	143	143	5	5
충남(14)	1.4	278	183	87	53
전북(17)	0.8	358	290	85	66
전남(22)	0.9	15	15	17	17
경북(22)	1.1	201	169	45	35
경남(20)	1.2	307	236	75	56
제주(3)	3.3	269	49	69	12
1개센터 평균	2.0	549.3	251.5	120.2	53.8

3)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배치 : 장애영아 교육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대다수의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아는 장애가 있음을 명확하게 진단한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지원받고 있음. 조사결과 전체 특수교육대상 장애 영아의 80.4%가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장애영아의 경우 장애가 드러나지 않지만,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어 조기에 특수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아의 경우에도 특수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영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등)가 제공되어야 함.
-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아 중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4.3%만이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를 함께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업만 지원받고 있는 비율이 17.9%(68명)인 것으로 나타남.

(2) 개선방안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를 선정할 시, 장애인 등록 여부 또는 임상적인 장애 여부도 중요하지만 장애가 의심이 되고, 조기교육 또는 조기중재가 필요하면 적절한 특수교육을 지원하여 장애 심화 또는 2차 장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에 대한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참고자료

① 법적근거

- 관련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및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2012 특수교육 운영계획 중 시·도교육청 조치 사항

<p>① 장애영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시·도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 장애영아 진단, 부모교육 및 상담 운영 - 교원 및 행정가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대상 홍보 실시 - 장애영아 무상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연수 실시 <p>② 장애영아학급 설치·운영, 순회교육 등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아 조기중재를 위해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확대 <p>※ 시·도별 영아학급 설치 계획 제출 : '12년 2월 1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장애영아 순회교육 제공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선정 기준

<표7>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선정 기준

(단위 : 명)

시도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여부	장애 의심	조기교육 필요 여부	계
서울	13	12	6	4	35
부산	5	5	5	5	20
대구	4	4	4	4	16
인천	3	3	5	3	14
광주	2	2	2	2	8
대전	9	0	0	0	9
울산	2	2	2	1	7
경기	15	19	9	9	52
강원	17	17	17	17	68
충북	11	11	11	11	44
세종	0	0	0	0	0
충남	13	14	13	13	53
전북	11	7	5	5	28
전남	15	18	0	3	36
경북	23	11	8	8	50
경남	12	20	13	13	58
제주	1	2	0	0	3
계	156(31.1%)	147(29.3%)	100(20.0%)	98(19.6%)	501(100.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수 및 교육지원 현황

<표8>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수 및 교육지원 현황

(단위 : 명)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수	장애영아 교육 현황				계
		수업지원 +관련 서비스	수업지원	관련 서비스	지원없음	
서울	46	34	0	12	0	46
부산	0	0	0	0	0	0
대구	23	14	0	9	0	23
인천	59	3	10	46	0	59
광주	0	0	0	0	0	0
대전	9	8	1	0	0	9
울산	36	17	7	0	12	36
경기	88	35	38	3	10	86
강원	3	3	0	0	0	3
충북	60	13	3	44	0	60
세종	0	0	0	0	0	0
충남	6	5		1	0	6
전북	15	13	0	1	2	16
전남	3	1	2	0	0	3
경북	9	2	6	1	0	9
경남	12	11	0	1	0	12
제주	10	9	1	0	0	10
계	379(100.0%)	168(44.3%)	68(17.9%)	118(31.1%)	24(6.3%)	378(99.7%)

※ 전북의 경우 영아 수와 교육 현황 인원 수 불일치

4. 순회교육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 통계 내용 중 '특수학급 순회교육 현황'에 따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8명, 1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4명, 1학급당 교사 수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남.

- ▶ 교사 1인당 교사 수: 교사 1인당 학생 3.8명
(유치원 3.2명, 초등부 3.7명, 중등부 3.6명, 고등부 4.4명)
- ▶ 학급당 학생 수: 1학급 당 평균 4명 배정
- ▶ 학급당 교사 수: 1학급당 교사 1명 배정

• 같은 자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8명이며, 정규 교사 대 강사 비율이 1(정규교사): 1.5(강사) 인 것으로 나타남.

-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전국 평균 4.8명
 - 전국 평균 상위지역: 대전 11.9명, 경남 6.2명, 강원 6.0명, 인천 5.9명, 경북 5.7명
- ▶ 정규 교사 대 강사 비율
 - 정규 교사:강사 = 1:1.5

• 그러나 이 때, 시·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비율에 차이가 많고, '대전, 경남, 강원, 인천, 경북'의 경우 교사 1인당 담당해야할 순회교육 학생 수가 과중함. 또한 정규 교사 대비 강사의 비율이 너무 많아,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같은 자료에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황'에 따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1명으로 나타남.

-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전국 평균 2.1명
 - 전국 평균 상위 지역: 서울 3.9명, 부산 3.0명, 대구 2.4명, 인천 2.9명, 대전 6.9명, 강원 4.7명, 충남 2.8명, 제주 4.4명

• 같은 자료에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내역'을 보면,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대비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수는 평균 21.5%였고, 순회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수 대비 순회교육 교사 수는 교사 1인당 학생 5명임.

▶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대비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수

- 전국 평균 21.5%
- 전국 평균 이하 지역: 서울 13.4%, 부산 0.8%, 인천 16.9%, 대전 8.5%, 울산 6.4%, 경기 3.9%

▶ 순회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수 대비 순회교육 교사 수

- 전국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5.0명
- 전국 평균 이상: 서울 6.7명, 광주 6.2명, 충북 5.6명, 충남 6.5명, 경남 6.0명

- 결국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중 전국평균 21.5%만 순회교육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16%만 특수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서울 13.4%, 부산 0.8%, 인천 16.9%, 대전 8.5%, 울산 6.4%, 경기 3.9%만 순회교육지원을 받고 있음
- 같은 자료에서 '전국 평균 순회교육 지원 시간'은 유치원이 20.67시간, 초등학교가 38.7시간, 중학교가 30.27시간, 고등학교가 21.20인 것으로 나타났고, 순회교육대상 학생 급별 비율은 유치원 20%, 초등 39%, 중등 24%, 고등학교 16% 비율로 받고 있음.

▶ 주당 순회교육 지원 시간

- 유치원 전국 평균 순회교육 지원 시간: 20.67시간
 - 전국 평균 이하 지원 지역 : 인천 6시간, 광주 4시간, 대전 3시간, 울산 4시간, 세종 4시간, 제주 4시간
 - 초등학교 전국 평균 순회교육 지원 시간: 38.7시간
 - 전국 평균 이하 지원 지역 : 인천 8시간, 광주 4시간, 대전 5시간, 울산 7시간, 세종 4시간
 - 중학교 전국 평균 순회교육 지원 시간: 30.27시간
 - 전국 평균 이하 지원 지역: 서울 10시간, 부산 20시간, 인천 7시간, 광주 4시간, 대전 8시간, 울산 2시간, 세종 4시간, 제주 6시간
 - 고등학교 전국 평균 순회교육 지원 시간: 21.20시간
 - 부산 4시간, 인천 7시간, 광주 7시간, 대전 4시간, 울산 2시간, 세종 4시간, 제주 12시간
- ▶ 순회교육 대상 학생 급별 비율
- 유치원 20%, 초등 39%, 중등 24%, 고등학교 16% 비율로 받음

- 주당 순회교육 지원 시간은 전국적으로 편차가 심함. 특히 유치원의 경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6시간미만으로 주당 특수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초등학교의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8시간미만, 중학교의 경우 서울, 광

주, 대전, 울산은 10시간미만으로 특수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7시간미만의 특수교육지원을 받고 있음.

- 같은 자료에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수업지원 순회특수교육 횟수'를 보면, 평균 주1회 24.9%, 주 2회 70.7%, 주 3회 2.4%, 주 4회 0.9%, 주 5회 0.4% 비율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당 수업지원 순회특수교육 횟 수

- 주 1회 24.9%, 주 2회 70.7%, 주 3회 2.4%, 주 4회 0.9%, 주 5회 0.4%

▶ 지역별 주당 수업지원 순회특수교육 횟 수

- 주 1회 지역: 서울, 인천, 대전

- 주 2회 지역: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세종,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내역'과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수업지원 순회특수교육 횟수'를 공동비교 하게 했을 때, 주 1회가 24.9%, 주 2회가 70.7% 일 때 주 1회 또는 주 2회 수업에서 주당 평균 수업 지원인 유치원은 20.67, 초등학교는 38.07시간, 중학교는 30.27시간, 고등학교는 21.02시간을 수업하는 것으로 해석됨. 결국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예) 서울의 경우 주당 수업 시간이 유치원 31시간, 초등부 26시간 중학교 10시간 고등학교 27시간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의 경우 주 1회 수업이 84%로 실시한다고 할 때 1일에 31시간 26시간 10시간 27시간의 수업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같은 자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특수교육 순회교사 자격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정규직 교사 배치 비율은 평균 98.7%였고, 특수교사 자격 현황은 유아전공 특수교사 3.3%, 초등특수 47.2%, 중등특수교사 31.1%, 재활복지 전공 19.7% 비율로 배치되었음. 그러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자 현황에서 살펴보면 전체 대비 유치원 20%, 초등 39%, 중등 24%, 고등학교 16% 비율로 배치되어 있음에도, 교사 자격은 이에 비례하여 배치되지 않아, 해당 연령에 있는 전문적인 순회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정원 대비 정규직 교사 배치 비율

- 전국 평균 98.7%
- 전국 미달 지역: 서울 61.3%, 부산 91.7%, 전남 86.3%

▶ 특수교사 자격 현황

- 유아전공 특수교사 3.3%, 초등특수 47.2%, 중등특수교사 31.1%,
재활복지 전공 19.7% 비율로 배치됨

- 같은 자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특수교육 순회교사 급별 현황'은 장애영아 전담 0.3%, 장애 유아 전담 0.3%, 초등특수 전담 53.7%, 중등특수 전담 41.9%, 직업재활 전담 11.4%로 나타남. 이 역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자 현황인 유치원 20%, 초등 39%, 중등 24%, 고등학교 16% 비율로 배치에 비해, 전담교사는 장애영아 전담 0.3%, 장애 유아 전담 0.3%, 초등특수 전담 53.7%, 중등특수 전담 41.9%, 직업재활 전담 11.4%로 배치되어 있어 전담 인력의 수급이 필요한 상황임.

▶ 정규직 순회교사 급별 현황

- 장애영아 전담 0.3%, 장애 유아 전담 0.3%, 초등특수 전담 53.7%,
중등특수 전담 41.9%, 직업재활 전담 11.4%

- 같은 자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특수교육 순회교사 연령 현황'에 따르면, 25세 미만 2.9%, 25세~30세 21.9%, 30세~35세 39.1%, 35세~40세 13.7%, 40세 이상은 22.6% 비율로 배치되어 있음.

2) 개선방안

- 특수교사지원센터의 정규 교사를 확충하여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순회교육 학생 수를 줄이고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3) 참고자료

(1) 법적근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정의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 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2012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과학 기술부)

가. 순회교육의 지원 범위

-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구 강화

- 지도방법,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강화

다.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순회교육 운영방안)

1. 운영 방침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 실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2. 학급 편성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7조에 의해 편성하되 거주지별, 시설별로 무학년제 편성 가능

3. 교육과정 운영

-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자 지원
 - 방문 교육: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 교육: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 교육: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 교육: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 교육: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 본 운영 방안을 참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라.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순회교육 대상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선정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학교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선정·배치)
- ② 순회학급 설치 및 순회학급 담당교사 배치
- ③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비 등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지원
- ④ 순회교육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성폭력(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철저
- ⑤ 특수교육대상학생 뿐만 아니라 순회교사에 대한 성폭력(추행) 예방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사 배치 결정

(3) 2012년 특수교육 통계(교육과학기술부)

• 특수학급 순회교육 현황

<표9> 특수학급 순회교육 현황

(단위 : 명)

비고	학급수			교사수				학생수				
	계	순회 학급	파견 학급	계	순회 학급	파견 학급	겸임 순회 교육	계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전체	461	397	64	490	343	64	83	1,873	577	1054	14	228
유	9	8	1	11	7	1	3	36	15	7	1	10
초	236	165	41	252	162	41	49	940	256	566	226	110
중	125	105	20	136	88	20	28	492	139	251	108	101
고	91	89	2	91	86	2	3	405	167	230	84	7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현황

<표10>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현황

(단위 : 명)

비고	학급수					교사수								교사 1인 당 학생 수
	계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특수교사		재활복지 교사		치료교육 교사		
						정 규 교 사	강 사	정 규 교 사	강 사	정 규 교 사	강 사	정 규 교 사	강 사	
전체	3,504	256	154	5	3,089	284	435	226	405	56	8	2	22	4.8
서울	238	-	-	-	238	27	34	20	34	7	-	-	-	3.0
부산	91	24	27	-	40	22	23	18	23	4	-	-	1	2.0
대구	82	17	6	1	58	12	14	11	12	1	1	-	1	3.1
인천	142	2	4	-	136	10	14	6	14	4	-	-	-	5.9
광주	74	1	-	-	73	4	12	-	12	-	-	-	-	4.6
대전	376	11	13	-	352	12	9	9	7	3	1	-	1	17.9
울산	56	6	2	1	47	6	16	6	16	-	-	-	-	2.5
경기	164	43	1	-	120	53	29	36	27	17	2	-	-	2.6
강원	439	24	23	-	392	22	50	16	47	5	-	1	3	6.0
충북	230	24	5	1	200	11	33	11	33	-	-	-	-	5.2
충남	220	15	18	-	187	18	27	17	24	1	2	-	1	4.8
전북	177	10	16	1	150	15	27	14	23	1	-	-	4	4.1
전남	363	20	5	-	338	18	57	15	47	3	-	-	10	4.8
경북	394	36	25	-	333	24	44	19	40	4	2	1	2	5.7
경남	403	23	9	1	370	24	40	23	40	1	-	-	-	6.2
제주	55	-	-	-	55	6	6	5	6	1	-	-	-	4.2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황

<표11> 일반학급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황

(단위 : 명)

비고	학생 수					교사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계	유치 원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계	특수 학교 교사	특수 학급 교사	특수교육 지원센터 교사 (강사)	
전체	2782	541	102	728	411	1313	1	102	1210	2.1
서울	238	94	56	50	38	61	-	-	61	3.9
부산	60	36	11	5	8	20	-	-	50	3.0
대구	73	18	16	14	25	30	-	4	26	2.4
인천	128	74	24	14	16	43	-	5	38	2.9
광주	49	20	20	9	-	29	-	-	8	1.6
대전	55	26	12	13	4	8	-	-	8	6.8
울산	26	1	12	7	6	21	-	-	21	1.2
경기	111	21	59	16	15	88	-	-	21	1.3
강원	392	35	171	155	31	83	-	6	77	4.7
충북	212	22	93	63	34	122	-	2	120	1.7
충남	188	42	98	31	17	66	-	11	55	2.8
전북	177	19	84	55	19	92	-	6	86	1.9
전남	254	21	93	60	80	141	-	16	125	1.8
경북	334	26	150	105	53	192	-	1	191	1.7
경남	379	69	141	114	55	233	-	8	25	1.7
제주	106	17	62	17	10	24	1	41	12	4.4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내역

<표12> 일반학급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내역

시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수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211	780	515	435	1,941	102	70	51	39	262 (13.4)
부산	375	474	292	228	1,369	33	23	18	18	112 (0.8)
인천	202	304	157	175	838	91	26	12	13	142 (16.9)
광주	74	200	105	52	431	17	47	13	23	100 (23.2)
대전	105	269	158	183	715	28	15	13	5	61 (8.5)
울산	72	332	189	183	776	21	17	6	6	50 (6.4)
경기	301	1,127	614	805	2,847	21	59	17	15	112 (3.9)
강원	41	187	187	112	527	39	182	183	183	587 (111)
충북	68	299	215	279	861	27	95	66	33	221 (25.6)
세종	1	2	1	1	5	1	2	1	1	5 (100)
충남	95	272	101	113	581	84	209	71	41	405 (69.7)
전북	82	342	207	208	839	19	101	54	24	198 (23.5)
경북	127	408	257	248	1,040	42	156	101	40	339 (32.5)
경남	176	563	382	378	1,499	83	149	121	58	411 (29.4)
제주	38	102	26	48	214	18	64	23	10	115 (53.7)
비고	1,968	5,661	3,406	3,448	14,483	626	1,215	750	509	3,120 (21.5)
	-					20	39	24	16	100

평균

시도	순회교육대상자 1인당 주당 순회교육 지원 시간				순회교육교사 소속				교사 1인당 학생 수
	유	초	중	고	지원 센터	특수 학교	특수 학급	계	
서울	31	26	10	27	39	·	·	39	6.7
부산	20	24	20	4	39	·	·	39	2.8
인천	6	8	7	7	28	·	·	28	5.0
광주	4	4	4	7	16	·	·	16	6.2
대전	3	5	8	4	15	·	·	15	4.0
울산	4	7	2	2	18	·	·	18	2.7
경기	33	74	42	27	82	·	·	82	1.3
강원	44	68	68	32	77	7	21	105	5.6
충북	23	65	51	29	45	·	·	45	4.9
세종	4	4	4	4	3	·	·	3	1.6
충남	43	97	88	52	44	·	18	62	6.5
전북	29	55	31	48	35	·	2	37	5.4
경북	31	60	66	31	67	·	·	67	5.0
경남	31	47	47	32	64	·	4	68	6.0
제주	4	27	6	12	12	·	41	53	2.1
비고	20.67	38.07	30.27	21.20	38.93	7.00	17.20	45.13	5.0
	평균				평균				4.43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수업지원 순회특수교육 횟수

<표1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수업지원 순회특수교육 횟수

시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수업지원 순회 특수교육 대상자 수	수업지원 순회특수교육 횟수(명)					계
			주1회 (%)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서울	1941	243	180(84.1)	33(15.4)	-	1(0.4)	-	214
부산	1369	92	-	92(100)	-	-	-	92
인천	838	142	102(71.8)	35(24.6)	5(1.4)	-	-	142
광주	431	100	20(20)	80(80)	-	-	-	100
대전	715	61	32(52.4)	29(47.5)	-	-	-	61
울산	776	45	4(8.8)	41(91.2)	-	-	-	45
경기	2847	112	15(13.3)	96(86.7)	-	-	-	112
강원	527	487	83(17)	404(82.9)	-	-	-	487
충북	861	221	43(19.4)	170(76.9)	8(3.6)	-	-	221
세종	5	5	-	5(100)	-	-	-	5
충남	581	405	-	404(99.7)	1(0.3)	-	-	405
전북	866	171	71(39.8)	98(55)	1(0.5)	5(2.8)	3(1.6)	178
경북	1040	320	121(37.8)	172(53.7)	27(8.4)	-	-	320
경남	1499	411	67(16.3)	288(70.0)	32(7.7)	23(5.6)	1(0.2)	411
제주	214	164	4(0.2)	160(97.6)	-	-	-	164
계	14,510	2,979	742	2107	74	29	13	2,957
평균	-	20.5	24.9	70.7	2.4	0.9	0.4	100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특수교육 순회교사 자격 현황

<표14>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특수교육 순회교사 자격 현황

시도	정원에 따라 배치됐어야 하는 정규직 특수교사수	2012 실제로 배치된 정규직 특수교사 수(%)	특수교사 자격 종류				계
			유아전공	초등전공	중등전공	재활복지	
서울	44	27(61.3)	0	14	7	7	28
부산	24	22(91.6)	-	14	6	2	22
대구	12	12(100)	1	4	6	1	12
인천	2	17(850)	0	4	7	6	17
광주	8	8(100)	-	2	2	4	8
대전	8	12(150)	-	4	5	3	12
울산	6	6(100)	-	4	2	-	6
경기	57	55(96.4)	-	26	11	18	55
강원	22	22(100)	-	8	11	3	22
충북	11	11(100)	-	6	5	-	11
세종	1	1(100)	-	1	-	-	1
충남	20	20(100)	1	13	5	1	20
전북	16	16(100)	-	9	4	3	16
전남	22	19(86.3)	8	-	10	4	22
경북	24	24(100)	-	18	-	6	24
경남	24	24(100)	-	12	11	1	24
제주	8	9(112.5)	-	5	3	1	9
계	309	305(98.7)	10	144	95	60	309
%	100	98.7	3.3	47.2	31.1	19.7	101

실제 배치된 정규직 특수교사 수 대비 %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특수교육 순회교사 급별 현황

<표1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특수교육 순회교사 급별 현황

시도	정규직 특수 교사 수	특수교사 급별 현황(명)						계
		장애영아 전담교사	장애유아 전담교사	초등특수 전담교사	중등특수 전담교사	직업재활 전담교사	기타	
서울	27(100%)	-	-	13(48.1)	11(40.7)	3(11.1)	-	27(100%)
부산	22(100%)	-	-	14(63.6)	6(27.2)	2(27.2)	-	22(100%)
대구	12(100%)	1(8.3)	-	4(33.3)	7(58.3)	-	-	12(100%)
인천	17(100%)	-	-	5(29.4)	7(41.1)	-	5(29.4)	17(100%)
광주	8(100%)	-	-	4(50)	2(25)	2(25)	-	8(100%)
대전	12(100%)	-	-	5(41.6)	1(8.3)	6(50)	-	12(100%)
울산	6(100%)	-	-	4(66)	2(34)	-	-	6(100%)
경기	55(100%)	-	1	30(54.5)	17(30.9)	7(58.3)	-	55(100%)
강원	22(100%)	-	-	42(190)	50(227)	7(31.8)	-	99(450%)
충북	11(100%)	-	-	2(18.1)	5(45.4)	-	-	76(63.6%)
세종	1(100%)	-	-	-	-	-	-	0(0%)
충남	20(100%)	-	-	4(20)	1(5)	-	-	5(25%)
전북	16(100%)	-	-	10(62.5)	2(12.5)	4(33.3)	-	16(100%)
전남	19(100%)	-	-	5(26.3)	10(52.6)	4(21.0)	-	19(100%)
경북	24(100%)	-	-	14(58.3)	-	-	-	14(58.3%)
경남	24(100%)	-	-	3(12.5)	3(12.5)	-	-	6(25%)
제주	9(100%)	-	-	5(55.5)	4(44.4)	-	-	9(100%)
계	305(100%)	1(0.3)	1(0.3)	164(53.7)	128(41.9)	35(11.4)	5(1.6)	403(132%)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특수교육 순회교사 연령 현황

<표16>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정규직 특수교육 순회교사 연령 현황

시도	정규직 특수교사 수	특수교사 연령 현황(명, %)					계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서울	27명(100%)	2명(7.4%)	8명(29.6%)	10명(37%)	3명(11.1%)	4명(14.8%)	27(100%)
부산	22(100)	-	1(4.5)	4(18.1)	8(36.3)	9(40.9)	22(100)
대구	12(100)	-	2(16.6)	3(25)	3(25)	4(33.3)	12(100)
인천	17(100)	-	3(17.6)	9(52.9)	3(17.6)	2(11.7)	17(100)
광주	8(100)	-	2(25)	3(37.5)	-	3(37.5)	8(100)
대전	12(100)	-	-	8(66.6)	4(33.3)	-	12(100)
울산	6(100)	-	2(33.3)	2(33.3)	-0	2(33.4)	6(100)
경기	55(100)	1(1.8)	8(14.5)	27(49.0)	6(10.9)	13(23.6)	55(100)
강원	22(100)	-	1(4.5)	14(63.6)	3(13.6)	4(18.1)	22(100)
충북	11(100)	-	4(36.3)	4(36.3)	3(27.2)	-	11(100)
세종	1(100)	-	-	-	-	1(100)	1(100)
충남	20(100)	-	1(5)	2(10)	2(10)	15(75)	20(100)
전북	16(100)	2(12.5)	6(37.5)	4(25.0)	1(6.25)	3(18.75)	16(100)
전남	19(100)	2(10.5)	10(52.6)	7(26.8)	-	-	19(100)
경북	24(100)	1(4.1)	9(37.5)	9(37.5)	2(8.2)	3(12.5)	24(100)
경남	24(100)	-	8(33.3)	9(37.5)	2(8.3)	5(20.8)	24(100)
제주	9(100)	1(11.1)	2(22.2)	4(44.4)	2(22.2)	1(11.1)	10(100)
계	305(100)	9(2.9)	67(21.9)	119(39.1)	42(13.7)	69(22.6)	306(100.3)

5.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1) 현황 및 문제점

- 자료가 미제출된 대구와 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통합학급은 43,033개 학급이고,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수 역시 43,033명임. 그 중 특수교사 자격소지자가 533명으로 1.24%이며, 60시간 이상 관련연수 이수자가 24,360명으로 56.61%를 차지함. 30~59시간 특수교육 관련연수를 이수한 교사도 3,389명으로 7.88%임. 어느 정도든 특수교육 관련연수를 받은 교사가 65.72%이고, 아무런 연수도 받지 않은 교사가 14,648명으로 34.04%나 됨.
-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경남(0%), 강원(0.64%), 제주(1.50%) 등 거의 대부분의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도준비가 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서울(74.31%), 충남(60.34%)처럼 통합학급을 맡아 장애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나 전혀 준비가 안 된 교사가 대부분인 지역도 있음.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북도 마찬가지로 거의 받은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뜻임.
- 서울, 충남,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북의 미이수율은 평균 60.31%임. 이러한 비율은 장애학생의 통합을 물리적 통합에만 그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냄.

2) 개선방안

-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를 위해 교육청별로 연수 내용을 개발하고 개설해야 함. 교육청은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우선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이해나 특수교육 관련연수를 이수하도록 세부계획을 세우고 추진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사항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원 필요.

3) 참고자료

(1)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에 대한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2) 2012학년도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표17> 2012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단위 : 명, %)

시도	일반학교배치 특수교육대상자수 (일반학급 +특수학급)	통합 학급수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이수 현황				미이수 비율
			특수교사 자격소지	6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60시간 이내	미이수	
서울	8,188	6,840	43	1,434	280	5,083	74.31
부산	3,985	3,591	57	2,091	120	1,323	36.84
대구	-	-	-	-	-	-	-
인천	3,520	2,587	47	2,296	45	246	9.51
광주	1,762	1,517	19	744	81	673	44.36
대전	2,245	1,852	27	953	62	810	43.74
울산	1,780	1,568	5	674	25	864	55.10
경기	14,442	9,975	101	6,884	1,352	1,638	16.42
강원	2,005	1,574	18	1,091	455	10	0.64
충북	2,548	2,064	27	1,322	17	698	33.82
세종	142	117	1	63	1	52	44.44
충남	3,209	2,577	56	897	69	1,555	60.34
전북	3,261	1,787	37	784	39	769	43.03
전남	-	-	-	-	-	-	-
경북	3,161	2,520	28	1,414	159	919	36.47
경남	4,728	3,929	59	3,276	594	0	0
제주	850	535	8	437	90	8	1.50
전체	55,826	43,033	533	24,360	3,389	14,648	
비율			1.24	56.61	7.88		34.04

(3)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정기준

서울	해당학교 별 학급배정 기준에 따름
부산	특수교사 자격증과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자 통합학급 경력 소지자
인천	1.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2.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과 특수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특수학급 담임 및 특수학교 근무경력자(다경력자 우선) 4.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자 5.통합학급 담임 경력자(다경력자 우선순) 6.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개별화교육 지원팀 회의와 인사 자문위원회의 협의후 학교장이 결정함
광주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특수교육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정 통합학급 희망교사 및 다경력자 우선 배정
대전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이상)를 이수한 경우 모든 학급에 균등하게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통합학급 담당교사 본인 희망 및 특수학급 학생 계열선택에 따라 임의 배정 통합학급 담당 경험 여부
울산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을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이상)를 이수한 교사 특수교육 직무연수 이수자 또는 예정자
경기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직 무연수(60시간이상) 이수자를 통합학급 담당교사로 우선 배치
충북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이상 이수한 자.
세종	1.특수교사 자격증 소지교사 2.특수교육 관련 60시간 이상 연수 이수자
충남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 우선 배정
전북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이해와 지도가 가능한 전문성을 함양한 지도교사 통합학급 관련 연수이수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교원 우선배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교원, 본인 희망
경북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또는 6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 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연수 미이수자는 2012년내에 연수 이수
경남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 이수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
제주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

6.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 통학소요시간

1) 현황 및 문제점

-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중 통학버스 이용자는 13,995명이며 이중 2,401명(17%)의 학생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하며 그 중 483명은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특수학교 내의 통학버스의 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광역 시·도 단위의 중심 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특수학교가 없는 농어촌의 군 단위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가기 위하여 하루에 2시간~3시간이상을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임.

2) 개선방안

- 등하교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통학버스 증차를 통한 등하교 시간 단축 필요.
- 중형 또는 소형승합차량 지원을 통해 다양한 통학버스 지원 필요.

3) 참고자료

(1)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1일 왕복 통학시간

<표18>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1일 왕복 통학시간

(단위 : 명)

시도	전체 학생 수	통학버스 이용학생 수	1일 왕복 통학시간				
			30분 이내	30분 이상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3시간 이상
			서울	4,851	2,825	1,135	1,527
부산	1,676	1,142	234	366	442	91	9
인천	1,376	733	75	393	631	104	8
광주	960	748	120	229	329	62	-
대전	937	580	86	121	325	48	-
울산	596	405	11	41	74	75	204
대구	-	-	-	-	-	-	-
경기	3,571	2,557	373	1,093	1,164	376	173
강원	1,026	790	156	471	145	66	18
충북	1,354	795	141	226	287	132	9
충남	1,024	866	22	235	431	175	3
전북	1,303	826	105	235	454	85	12
전남	-	-	-	-	-	-	-
경북	1,464	803	487	290	465	220	2
경남	1,488	1,049	369	562	470	74	13
제주	447	339	54	105	101	79	-
합계	22,073	14,458	3,368	5,894	7,109	1,953	483

7.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 개별화교육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안 작성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육교사가 작성하여야하나,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교육인력이 부족해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작성하거나 일반학급 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있음.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대구, 전남 제외) 15,213명임. 이에 따라 15,213팀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하나, 총 12,412팀(81.6%)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했고 총 2,801팀(18.4%)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지 않음.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을 위반한 것임.
- 시·도별로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지 않은 비율은, 대전 77.9%, 전북 65.7%, 인천 35.6%, 충북 29.2%, 경북 22.8%, 경기 21.6%, 광주 19.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회의 개최 여부를 보면, 전체 12,412개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중 10,592개(85.3%)의 팀만 회의를 개최하였고, 1,820명(14.7%)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회의 개최 없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시·도별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비율은, 충북 46.2%, 경기 27.3%, 인천 25.7%, 서울 24.2%, 전북 23.9%, 광주 18.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 개선방안

-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장학지도 실시 필요.

3) 참고자료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회의에 대한 법적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및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2)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표19>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1일 왕복 통학시간

(단위 : %)

시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개별화교육 지원팀 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개최 횟수 (%)					개별화교육 지원팀 회의 미개최 특수교육 대상자 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서울	2,129	2,129 (100)	636 (40.0)	734 (45.5)	50 (3.1)	136 (8.4)	1,613	516 (24.2)
부산	1,369	1,369 (100)	79 (5.8)	810 (59.2)	190 (13.9)	290 (21.2)	1,369	0
대구	-	-	-	-	-	-	-	-
인천	1,291	831 (64.4)	229 (37.1)	322 (52.2)	12 (1.9)	54 (8.8)	617	214 (25.8)
광주	431	346 (80.2)	108 (42.9)	115 (45.6)	12 (4.8)	17 (6.7)	252	94 (18.5)
대전	714	158 (22.1)	27 (17.1)	88 (55.7)	7 (4.04)	36 (22.8)	158	0
울산	776	776 (100)	679 (87.5)	93 (12.0)	2 (0.26)	2 (0.26)	776	0
경기	2,731	2,142 (78.4)	725 (46.5)	597 (38.3)	105 (6.7)	134 (9.2)	1,558	584 (27.3)
강원	527	527 (100)	0	300 (56.9)	227 (43.1)		527	0
충북	1,044	739 (70.8)	31 (7.8)	315 (79.1)	15 (3.8)	36 (9.0)	398	341 (46.1)
세종	5	5 (100)	0	5 (100)	0	0	5	0
충남	576	576 (100)	414 (71.9)	156 (21.1)	4 (0.7)	2 (0.3)	576	0
전북	866	297 (34.3)	102 (45.1)	112 (49.6)	9 (4.0)	3 (1.3)	226	71 (23.9)
전남	-	-	-	-	-	-	-	-
경북	1,041	804 (77.2)	429 (53.3)	213 (26.5)	90 (11.2)	72 (9.0)	804	0
경남	1,499	1,499 (100)	-	176 (11.7)	378 (25.2)	945 (63.0)	1,499	0
제주	214	214 (100)	51 (23.8)	160 (74.8)	3 (1.4)	0	214	0
합계	15,213	12,412 (81.6)	3,510 (33.1)	4,196 (39.6)	1,104 (10.4)	1,727 (16.3)	10,592	1,820 (14.7)

8. 특수학급 배치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 1급 등록증을 가진 중도·중복 장애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급은 전국 55.6%임. 유치원 43.3%, 초등학교 54.7%, 중학교 58.8%, 고등학교 61.6%로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1급 장애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시스템 개선의 방식을 지원하는 학급비율은 86.1% 이지만, 교사의 개인적인 헌신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학급비율은 17.8%로 나타남. 시스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교사의 개인적인 부담역시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

2) 개선방안

- 일반학교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사의 개인적인 헌신 등의 방법이 아닌,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의 증원 배치,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 운영하고 인천교육청처럼 특수학급 운영 형태를 다양화 필요.

3) 참고자료

(1)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근거

- 「201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중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계획에 근거, 특수교육 대상 학생중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가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2)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급 현황 및 지원현황

<표20-1>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급 지원현황

(단위 : %, 명)

시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개별화교육 지원팀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개최 횟수 (%)					개별화교육 지원팀 회의 미개최 특수교육 대상자 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서울	2,129	2,129 (100)	636 (40.0)	734 (45.5)	50 (3.1)	136 (8.4)	1,613	516 (24.2)
부산	1,369	1,369 (100)	79 (5.8)	810 (59.2)	190 (13.9)	290 (21.2)	1,369	0
대구	-	-	-	-	-	-	-	-
인천	1,291	831 (64.4)	229 (37.1)	322 (52.2)	12 (1.9)	54 (8.8)	617	214 (25.8)
광주	431	346 (80.2)	108 (42.9)	115 (45.6)	12 (4.8)	17 (6.7)	252	94 (18.5)
대전	714	158 (22.1)	27 (17.1)	88 (55.7)	7 (4.04)	36 (22.8)	158	0
울산	776	776 (100)	679 (87.5)	93 (12.0)	2 (0.26)	2 (0.26)	776	0
경기	2,731	2,142 (78.4)	725 (46.5)	597 (38.3)	105 (6.7)	134 (9.2)	1,558	584 (27.3)
강원	527	527 (100)	0	300 (56.9)	227 (43.1)		527	0
충북	1,044	739 (70.8)	31 (7.8)	315 (79.1)	15 (3.8)	36 (9.0)	398	341 (46.1)
세종	5	5 (100)	0	5 (100)	0	0	5	0
충남	576	576 (100)	414 (71.9)	156 (21.1)	4 (0.7)	2 (0.3)	576	0
전북	866	297 (34.3)	102 (45.1)	112 (49.6)	9 (4.0)	3 (1.3)	226	71 (23.9)
전남	-	-	-	-	-	-	-	-
경북	1,041	804 (77.2)	429 (53.3)	213 (26.5)	90 (11.2)	72 (9.0)	804	0
경남	1,499	1,499 (100)	-	176 (11.7)	378 (25.2)	945 (63.0)	1,499	0
제주	214	214 (100)	51 (23.8)	160 (74.8)	3 (1.4)	0	214	0
합계	15,213	12,412 (81.6)	3,510 (33.1)	4,196 (39.6)	1,104 (10.4)	1,727 (16.3)	10,592	1,820 (14.7)

<표20-2>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급 현황

(단위 : 개)

시도	전체 특수학급수	중증중복장애 학생(장애1급)이 있는 특수학급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서울	1,174	14(36.8)	450(66.0)	165(62.0)	131(69.7)	760(64.7)
부산	537	9(75.0)	181(55.2)	64(56.1)	56(67.5)	310(57.7)
대구	-	-	-	-	-	-
인천	478	8(33.3)	185(66.8)	67(67.0)	45(58.4)	305(63.8)
광주	266	5(62.5)	77(53.8)	42(63.6)	15(30.6)	139(52.3)
대전	280	12(38.7)	97(67.4)	42(62.7)	27(71.1)	178(63.6)
울산	199	2(28.6)	46(42.6)	31(64.6)	28(77.8)	107(53.8)
경기	2,265	45(45.5)	651(56.7)	399(66.9)	280(66.4)	1,375(60.7)
강원		13(100)	156(74.3)	44(73.3)	50	263
충북	305	5(35.7)	86(51.2)	31(43.1)	23(45.1)	145(47.5)
세종	30	0	8(50.0)	5(55.5)	2(50.0)	15(50.0)
충남	556	12(41.4)	112(36.5)	58(43.0)	40(47.1)	222(39.9)
전북	330	1(11.1)	70(32.4)	21(30.4)	12(33.3)	104(31.5)
전남	-	-	-	-	-	-
경북	515	3(42.9)	132(41.8)	57(48.3)	52(70.2)	244(47.4)
경남	661	6(35.7)	186(48.8)	89(52.7)	51(53.7)	332(50.2)
제주	96	1(25.0)	23(43.4)	10(40.0)	5(35.7)	39(40.6)
합계	7,692	136(43.6)	2,460(54.7)	1,125(58.8)	767(61.3)	4,518 (58.7)

1. 중등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1) 현황 및 문제점

- 중등특수학교 교사의 표시과목이 매우 다양한데, 2012년 현재, 중등특수학교교사 표시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일반사회, 재활복지, 가정, 역사, 공통사회, 생물, 지리, 직업교육, 음악, 도덕윤리, 재활복지, 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상업정보(상업), 전기전자통신, 청각장애, 화공섬유(화학), 정보컴퓨터, 기계금속, 재활복지, 심리학, 철학, 공사, 디자인공예, 역사, 조리, 지리, 불어, 환경’ 등으로 전국단위 최소 1명인 교과가 존재하기도 함.
- 1급자격연수 3년 이상 미이수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228명, 서울 160명, 부산 32명의 순으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1급 자격연수 미이수자는 1,034명이며, 3년 이상 미이수자는 356명임.
- 각 광역교육청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미이수자 현황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이는 희소교과 자격을 소지한 교사들에게 부전공연수 기회를 통해 자격연수를 받게 한 곳이 있는 반면, 극소수교과의 경우 이러한 기회마저 제공해주지 않아 자격연수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 각 광역교육청별로 경력이 3년 이상인 현직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희소교과 자격을 가진 교사들의 표시교과별 자격연수를 개설해야 함.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원의 임용, 인사, 직무·자격연수대상자의 지명 및 연수, 보수교육 등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으므로, 시·도교육감은 관내 교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해야 함.

- 전국단위 최소인원이 연수개설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희소교과표시 자격교사들에게 타 교과 부전공 연수를 개설하여 자격연수로 견인하도록 해야 함.

3) 참고자료

(1) 법적 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제20조 (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① 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는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립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3.16, 2008.2.25, 2010.4.16>

②자격연수중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1급)과정·사서교사(1급)과정·보건교사(1급)과정·영양교사(1급)과정 및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와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안에서 지명한다. <개정 1983.11.25, 1990.4.2, 1991.3.16, 1996.6.1, 1998.2.28, 2000.3.16, 2001.1.31, 2008.2.25, 2008.3.4>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1장

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초등교육연수원·중등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개정 2000.2.28>

②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부설하되, 국립의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의 명칭과 위치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의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부설하는 연수원은 당해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관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2001.1.29, 2003.7.30>

2. 중등교육연수원 및 교육행정연수원 : 대학 또는 산업대학
3. 종합교육연수원 : 대학·산업대학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
4. 원격교육연수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2006.4.6, 2007.12.20,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8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중등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미이수 현황

- 중등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미이수 기관 현황

<표21> 중등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미이수 기관 현황

(단위 : 명)

시도	중등 특수교사 수	중등특수교사 1정자격 연수 미이수 경과 기간 현황					비고
		1년 이내	1년이상 2년이내	2년이상 3년이내	3년 이상	미이수 자 합계	
서울	1796	45	49	35	160	289	
부산	462	10	2	6	32	50	
대구	-	-	-	-	-	-	
인천	370	15	12	9	13	49	
광주	4	0	0	2	2	4	
대전	5	2	0	2	1	5	본인미희망
울산	195	1	0	0	0	1	자격연수 희망자 중 정원으로인해 미이수한 자
경기	681	32	12	1	0	45	
강원	1	1	0	0	0	1	
충북	298	5	4	1	13	23	
세종	10	0	0	0	0	0	
충남	296	4	5	1	1	11	
전북	181	2	1	1	3	7	
전남	-	-	-	-	-	-	임용전경력포함
경북	166	5	8	2	2	17	육아휴직으로 본인 연기
경남	15	11	3	0	1	15	
제주	142	133	96	60	228	517	
합계	4,622	266	192	120	456	1,034	

• 중등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미이수 해소 방안 및 대책

서울	-시도교육청이 연합하여 특수자격 연수를 개설함으로써 소수인원의 특수 과목 자격연수를 실시함
부산	-중등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시도별 연수개설 최소인원의 모집이 어려워, 전국 단위의 연수기관을 교과부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과부에 특수교육 관련 희소과목의 자격연수 과정 개설, 연수방법의 변경(원격연수 고려)에 대해 적극 건의함
대구	
인천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 후 소수 교과목 통합 연수과정 개설 방안 검토
광주	-해당 표시과목(철학) 교사 수의 극소수로 인한 연수과정 개설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미이수 해소 방안의 하나로 해당 과목 교사의 전국 단위 모집을 통한 연수과정 개설을 추진 중임. -대학원으로 대체 예정(육아휴직, 건강상의 치료 등으로 연수 이수시기 넘김)
울산	-1명(1명이내) 미이수 교사는 향후 시교육연수원이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설하는 자격연수를 이수하겠음
경기	-2급정교사 소지자 중 교육경력 4년 내외에 자격연수 실시하고 있음 -희소과목 소지자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원격 직무연수 이수 후 해당 교과목의 일반교사 대상 자격연수에 의뢰하여 특수 1정 자격 취득 -일반교사 대상 자격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목은 부득이 2012년 연수 의뢰하지 못하였으나(3명:불어,심리학,환경), 일반교사 대상 희소과목 연수 실시를 위하여 매년 전국의 담당자가 협의하여 추진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교사와 비슷한 연차에 자격연수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충북	-표시과목별 자격연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격증 소지인원이 적어 3년이내에 동표시과목별 자격연수가 불가능한 희소과목 교사에 대하여는 표시과목 해당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동 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에 관한 60시간정도의 연수를 별도 실시 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 수여
충남	-희소교과에 대한 연수 개설 지원
경북	-각시도교육청 해당 표시과목 자격연수 연수과정 개설시 위탁
경남	-미연수자 과목(역사, 직업, 도덕 등)은 희소 과목 소지자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모집 연수 기회 제공 필요함

(3) 특수교사(재활복지) 자격연수 관련 내용

- 특수교사(재활복지) 자격연수과정 개설 현황

<표22> 특수교사(재활복지) 자격연수과정 개설 현황

(단위 : 명)

시도	2012년8월 현재 특수교사 (재활복지) 자격소지자현황(단위,명)					해당시도교육청특수교사 (재활복지) 자격연수과정개설/ 참여현황(해당란에 ○,×)			비고
	실기 교사	준 교사	2정	1정	계	준 교사	2정	1정	
부산	-	4	1	4	9				
대구		1			1	1	1	1	
인천	-	7	18	12	37	1			
광주	-	7	2	10	19	1	1		2012년 준교사 7명 2정 2명
대전		3			3	1			
울산	-	-	1	-	1				
경기	20				20	1			
충북	-	3	11	10	24	1	1		
충남		1			1	1			부산대
전북		4	2	5	11		1		2정 4명
전남	3		1		4	1			
경북		3	15	1	19	1			12년부산대준,2급정 교사 과정
경남		3	6		9				
제주	-	3	-	-	3	1			
합계	23	39	57	42	161	10	4	1	

• 특수교사(재활복지) 자격연수 과정 미개설 이유 및 향후 대책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교사자격을 금번년도에 취득한 4명은 향후 특수교사자격전환연수가 교과부 주관으로 이루어질 예정임(향후 2014년 정교사자격연수, 2015년 특수교사자격전환연수 실시예정-교과부 주관) -현재 재활복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들은 별도의 교과부 주관 자격전환연수 개설시, 연수대상자로 추천할 예정
대구	전국단위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하며 시교육청 차원에서 연수과정 미개설
인천	<p>*미개설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교사 자격연수: 교과부에서 부산대학교 위탁기관지정으로 집합 연수과정 개설함 -2정자격연수: 준교사 자격소지자 중 2년 이상 경력교사가 없음 -1정자격연수: 2급정교사 자격소지자 중 3년이상 경력 교사가 없음 <p>*향후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정교사 자격소지자가 1급정교사 자격 취득을 희망할 경우, 3년이 경과한 다음에 1정 자격연수과정 개설 예정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시 재활복지 자격증 소지자는 올해 준교사 자격연수를 이수하여 취득한 3명 뿐임 -교원자격검정령에의해 5년 경과 후 2급정교사 자격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임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부전공 자격 취득 취득함 -자격전환예정
경기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대상자 계속 참여하여 특수교사 전환 추진
세종	-재활복지교사 없음
충남	-대상자가 없어 개설하지 않음
전남	-연수대상자가 소인수로 인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위탁하여 참여함
경북	-전국 단위 특수교사(재활복지) 자격 연수 과정 또는 복수, 부전공 연수 개설시 참여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연수 대상자 수가 적어서 미개설함.(재활복지 준교사 자격소지자 3명, 재활복지 2정 자격소지자 6명) -국립특수교육원이나 부산대학교 등에서 자격연수과정 개설 시 대상자 추천 및 연수비 지원 예정
제주	-해당사항 없음(2012.8. 준교사 자격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이수하였고 앞으로 2년 후에는 2정 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2. 특수학급 배치 전임 특수교사 성과상여금 등급 현황 분석

1) 현황 및 문제점

- 2011학년도 일반학교특수학급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특수교사 수(대구, 전남 제외)는 5,782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인원 375명을 빼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는 5,407명임. 이 중 S등급이 659명(12.19%), A등급이 2,216명(40.98%), B등급이 2,532명(46.83%)임.
-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과상여금의 추진목적으로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제시하였으나, 특정영역(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성과상여금 등급현황을 보면 그 비율에 의문이 생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인별 성과상여금의 인원배정비율은 30(S)-40(A)-30(B)으로 정해두고 으나, 특수교사의 B등급 대상자(46.83%)는 S등급 대상자(12.19%)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남. 이러한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동소이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남. 따라서 특수교사의 경우는 성과상여금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무력감만 안겨줄 수 있음.

2) 개선방안

- 특수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장애학생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자료

(1) 법적근거

<그림1>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2012. 2.), 교육과학기술부

4) 성과평가 기준(예시)

가. 교사의 '개인성과급' 평가기준

● 단위기관장은 아래 (예시)된 '교사 성과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차등지급 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되, 어느 한 평가분야의 반영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음

- 평가분야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개발 등

● 단위기관장은 분야별 세부 항목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30%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 분야를 추가 가능

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의 경우, 목표관리제 또는 학교(교장)평가 결과, 근무성적 등의 평가기준을 각 30%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성과급' 평가 결과가 20% 반영되므로 80% 범위 내에서 '개인성과급' 평가기준을 적용·반영

다. 성과 평가기준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되, 성과 평가시 '경력'요소 반영은 금지

<교사 성과 평가기준(예시)>

분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지도	수업시간 수	수업시간 수	수업시간 수
	수업공개 횟수 등	수업공개 여부 및 횟수	수업공개 여부 및 횟수
		계발활동지도	계발활동지도
		자치적응활동지도	자치적응활동지도
다학년지도 및 다교과지도 등		다학년지도 및 다교과지도	
		야간자율학습지도 등	
생활 지도	학부모 상담 실적	학부모 상담 실적	학부모 상담 실적
	선도·교통 지도 등	학생 상담 실적	학생 상담 실적
	학생 상담 실적	교문지도 및 중식지도 등	교문지도 및 중식지도 등
담당 업무	담임 여부	담임 여부	담임 여부
	보직 곤란도	보직 곤란도	보직 곤란도
	업무곤란도(기피업무 담당) 여부	업무곤란도(기피업무 담당) 여부	업무곤란도(기피업무 담당) 여부
	지도 학생 수상 실적	지도 학생 수상 실적	지도 학생 수상 실적
	근무일수	근무일수	근무일수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담임학년 곤란도	동아리 활동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통합학급 학생(특수아) 담임 여부 등	교과경시대회 지도	교과경시대회 지도
	수석교사 여부 등	교과 부장 여부 등	교과 부장 여부
		수석 교사 여부 등	진학취업 지도 수석 교사 여부 등 학교 특성화자율학교 업무담당 등
전문 성개 발	연수 이수 시간	연수 이수 시간	연수 이수 시간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연구대회 입상 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사, 선도 교사)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사, 선도 교사)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사, 선도 교사)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포상 실적 등	포상 실적	포상 실적
		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등	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등

(2) 특수학급 배치 전임교사 성과상여금 등급 내역

<표23> 특수학급 배치 전임교사 성과상여금 등급 내역

(단위 : 명)

시도	특수학급배치 전임특수교사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수	성과 상여금 등급 현황			제외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서울	1,016	968	119	519	330	48
부산	519	474	34	156	284	45
대구	-	-	-	-	-	-
인천	478	370	32	160	178	108
광주	196	195	30	86	79	1
대전	185	185	16	84	85	0
울산	149	143	9	51	83	6
경기	1183	1183	125	475	583	0
강원	323	323	70	115	138	0
충북	209	196	29	73	94	13
세종	25	23	3	9	11	2
충남	426	385	55	144	186	41
전북	185	179	34	70	75	6
전남	-	-	-	-	-	-
경북	384	332	42	113	177	52
경남	413	386	42	140	204	27
제주	91	65	19	21	25	26
합계	5,782	5,407	659	2,216	2,532	375
전체통계	-	-	12.19	40.98	46.83	-

3.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특수교사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교사의 경우 담임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급여를 적게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때문에 학교와 달리 업무 과중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잦으나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는 특수교사의 근무의지 및 동기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곧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

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정규 특수교사의 인센티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전남 이상 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특수교사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전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개선방안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특수교사에게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 필요.

3) 참고자료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직 교사 인센티브 부여 현황

<표24>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직 교사 인센티브 부여 현황

시도	희망자	무작위 전산 전보	인센티브 부여 현황					
	전보		전보 가산점	승진 가산점	부장 가산점	수당 지급	인센티브 없음	
부산	√		√				√	
인천	√	√						√
대구	√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경기	√		√	√				
강원	√						√	
충북	√		√					
세종	√							√
충남	√							√
전북	√							√
전남	목포, 함평, 장성, 나주	나머지 지역						√
경북	포항 구미, 영천,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나머지 지역					√	
경남	√		√				√	
제주	√		√	√				

1.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율 준수 현황

1)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현재 17개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율은 평균 0.91%에 불과해, 2011년도 조사결과 1.2%(박영아의원실, 2011)에 비해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울산이 1.90%로 가장 높고, 세종 0.13%, 부산 0.69% 등 아직도 1%도 안 됨. 최근 4년간의 평균 장애인 교원 고용율 역시 2009년 0.9%,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0.91%로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2) 개선방안

-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무고용율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사의 유형의 경우, 특수교사 및 상담교사는 각각 2.87%, 2.53%인데 반해, 유치원 및 초등 교사의 경우는 각각 0.63%, 0.48%로 나타남. 이에 따라 장애인 교원이 다양한 교사 직종에 고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3) 참고자료

(1) 장애인 교원 고용에 관한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시도 교육청별 전체 교원중 장애인 교원 비율

<표25> 시도 교육청별 전체 교원중 장애인 교원 비율

(단위 : 명)

시도	유치원 교사	초등 교사	중등 교사	특수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사서 교사	상담 교사	합계
서울	0.68%	0.54%	1.59%	2.22%	1.17%	1.84%	2.35%	3.33%	0.97%
부산	1.26%	0.38%	0.73%	3.85%	0.65%	0.00%	0.00%	2.78%	0.69%
대구	0.54%	0.57%	1.44%	2.82%	0.00%	0.00%	0.00%	0.00%	1.00%
인천	0.77%	0.39%	1.18%	3.74%	1.18%	0.00%	0.00%	2.74%	0.91%
광주	0.45%	0.54%	1.73%	1.84%	0.53%	0.00%	0.00%	0.00%	1.00%
대전	1.31%	0.92%	1.65%	6.77%	1.04%	0.00%	0.00%	0.00%	1.45%
울산	0.76%	6.29%	1.62%	3.21%	0.00%	0.00%	0.00%	2.94%	1.90%
경기	0.71%	0.16%	1.02%	1.54%	1.71%	0.28%	0.00%	2.96%	0.65%
강원	0.67%	0.33%	1.00%	2.82%	0.00%	0.00%	0.00%	0.00%	0.75%
충북	0.65%	0.48%	1.19%	2.02%	0.40%	0.00%	0.00%	0.00%	0.84%
충남	0.34%	0.39%	0.92%	2.72%	0.00%	1.63%	0.00%	0.00%	0.73%
전북	0.00%	1.06%	2.30%	4.13%	0.85%	0.39%	5.71%	3.92%	1.60%
전남	0.91%	0.58%	0.68%	2.68%	0.26%	1.03%	0.00%	0.00%	0.70%
경북	0.70%	0.66%	1.33%	1.99%	0.20%	0.00%	0.00%	5.56%	0.96%
경남	0.61%	0.64%	1.68%	3.67%	0.43%	0.49%	0.00%	3.85%	1.18%
제주	0.00%	0.40%	1.87%	6.75%	0.00%	3.23%	0.00%	16.67%	1.31%
세종	0.00%	0.00%	0.00%	6.25%	0.00%	0.00%	0.00%	0.00%	0.13%
계	0.63%	0.48%	1.25%	2.87%	0.78%	0.58%	0.70%	2.53%	0.91%

2.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교원은 총 1,628명을 모집하였고, 합격한 장애인은 540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33.2%의 인원만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최근 3년간 모집 인원내 비해 장애인 교원 합격자 수가 적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일반교사로 1,069명을 대체하여 채용하였고 모집공고 인원 중 총 65.6%에 달함.

- 이러한 현황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적극적 조치로서 도입된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2) 개선방안

- 매년 장애인 교원을 0.5%씩 증원하여 향후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를 달성해야 할 것.
- 합격자 수가 부족하여 그 인원을 일반교사로 대체하기 보다는 해당 인원을 누적시켜, 다음 연도에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교원의 의무고용 비율 달성 필요

3)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

<표26>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

(단위 : 명)

교사 자격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계			
	모 집 고 인 원 (A)	원 서 접 수 인 원	합 격 자 수 (C)	일 반 대 체 인 원 (A-C)	모 집 고 인 원 (A)	원 서 접 수 인 원	합 격 자 수 (C)	일 반 대 체 인 원 (A-C)	모 집 고 인 원 (A)	원 서 접 수 인 원	합 격 자 수 (C)	일 반 대 체 인 원 (A-C)	모 집 고 인 원 (A)	원 서 접 수 인 원	합 격 자 수 (C)	일 반 대 체 인 원 (A-C)
서울	80	186	48	32	53	166	39	14	89	202	43	46	222	554	130	92
부산	18	54	8	10	18	43	11	7	22	25	6	16	58	122	25	33
대구	17	68	13	4	17	55	9	8	32	37	11	21	66	160	33	33
인천	14	59	5	9	20	74	9	11	30	39	7	22	64	172	21	42
광주	17	34	8	9	20	25	8	12	43	34	9	34	80	93	25	55
대전	25	88	11	13	15	43	9	6	24	20	8	16	64	151	28	35
울산	17	84	9	8	10	33	4	6	14	10	4	10	41	127	17	24
경기	125	362	58	66	83	186	24	59	129	131	31	98	337	679	113	223
강원	21	41	2	19	19	26	5	14	24	18	4	19	64	85	11	52
충북	7	69	5	3	35	83	5	30	39	50	8	31	81	202	18	64
충남	33	67	8	25	32	27	4	28	48	16	2	46	113	110	14	99
전북	23	24	8	15	22	35	6	16	36	15	2	34	81	74	16	65
전남	22	27	0	22	33	27	4	29	40	54	9	31	95	108	13	82
경북	24	35	5	19	46	126	12	24	28	27	5	23	98	188	22	66
경남	37	114	16	25	47	118	14	33	55	72	16	39	139	304	46	97
제주	8	29	3	5	7	25	3	4	10	7	2	8	25	61	8	17
합계	488	1,341	207	284	477	1,092	166	301	663	757	167	484	1,628	3,190	540	1,069

1. 특수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

1) 현황 및 문제점

- 특수학교 운동부의 예산 재원을 살펴보면 후원금 및 모금액 42.85%, 교육청 지원비 22.20%, 학교 운영비 20.52%, 장애인체육회 지원 9.37%, 기타 5.06%로 나타남.
- 그러나 후원금 및 모금액의 경우 청주성심학교의 금액을 빼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교육비와 시도교육청의 지원금으로 특수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수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훈련 방법으로는 전체 79개의 운동부 중 방과 후 61개부(77.22%), 방과 후+합숙훈련 16개부(20.25%), 합숙훈련 2개부(2.53%)로 나타나 대부분의 운동부가 방과 후에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합숙을 운동부는 18개부(22.7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오랜 훈련시간 및 합숙훈련은 학생에게 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경북영광학교의 경우는 학기 중에도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2) 개선방안

- 특수학교 운동부의 예산은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학교교육비 보다는 시·도교육청의 지원금이나 장애인체육회등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며, 후원금 또는 모금액은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
-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그들의 특성에 맞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무리한 훈련시간은 줄일 필요가 있음. 또한 운동부 장애학생들에게 합숙을 시키는 것이 학교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학기 중에도 합숙훈련을 실시한 경북영광학교는 조사와 시정이 필요함.

3) 참고자료

•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전체 예산액

<표27>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전체 예산액

(단위 : 천원, %)

시도	운동부별 학생수	전체 예산 내역					합계
		학교 운영비	도교육청 지원비	후원금 및 모금액	장애인체육회 지원액	기타	
서울	43	9,582			4,200		13,782
부산	11	1,000			500		1,500
인천	24				5,000		5,000
광주	5	470	1,365		1,493		3,328
대전	47	8,870			12,000		20,870
울산	39	74,994	62,068		5,740		142,802
경기	137	35,855	5,000	40,000	224	30,110	111,189
강원	62	22,730	12,000		21,600		56,330
충북	95	16,822	84,199	363,476	11,700	4,600	480,797
충남	53	16,710	20,350		14,068		51,128
전북	7	2,145					2,145
경북	132	4,110	25,250	3,880	11,800	13,398	58,438
경남	8	1,800	800		744		3,344
전체 합계	663	195,088 (20.52)	211,032 (22.20)	407,356 (42.85)	89,069 (9.37)	48,108 (5.06)	950,653

•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전체 결산액

<표28>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전체 결산액

(단위 : 천원, %)

시도	운동부별 학생수	전체 결산액(단위: 천원)					합계
		훈련비 (A)	대회 참가비 (B)	지도자 임금 및 수당(C)	장비구입비 (D)	기타	
서울	43	1,231	5,474		4,905	2,090	13,700
부산	11	3,000	1,100		700		4,800
인천	24			800	4,200		5,000
광주	5	1,080	1,778				2,858
대전	47	2,750	2,961		6,146		11,857
울산	39	24,426	6,634	117,944	12,889	250	162,143
경기	137	19,612	15,640	66,564	26,509	3,144	131,469
강원	62	7,023	10,489	4,500	30,927	1,100	54,039
충북	95	185,564	2,290	18,426	63,887	209,752	479,919
충남	53	15,462	4,596	12,900	17,397	497	50,942
전북	7	330	715		1,100		2,145
경북	132	31,676.60	9,577.40		13,459	3,365	58,078
경남	8	1,192	412		1,740		3,344
전체 합계	663	293,346.60 (29.92)	61,666.40 (6.29)	221,224.00 (22.56)	183,859.00 (18.76)	220,198.00 (22.46)	980,294

•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후원금, 학교회계 편성여부

<표29>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후원금, 학교회계 편성여부

(단위 : 천원, 명)

시도	운동부별 학생수	연간 후원금 및 모금액	특수학교 운동부 후원금 및 모금액 학교회계 편성 여부 (운동부 수)		
			학교회계 삽입	학교회계 미삽입	해당 없음
서울 (총 3곳)	43				3 (100%)
부산 (총 2곳)	11				2 (100%)
인천 (총 2곳)	24				2 (100%)
광주 (총 1곳)	5		1 (100%)		
대전 (총 4곳)	47				4 (100%)
울산 (총 4곳)	39				4 (100%)
경기 (총 12곳)	137	26,079	1 (8.3%)		2 (16.7%)
강원 (총 7곳)	62				2 (28.6%)
충북 (총 15곳)	107	363,479	10 (66.7%)	1 (6.7%)	4 (26.7%)
충남 (총 11곳)	45				7 (63.6%)
전북 (총 1곳)	6				1 (100%)
경북 (총 12곳)	134	2,000	2 (16.7%)	1 (8.3%)	7 (58.3%)
경남 (총 1곳)	8				1 (100%)
전체 합계 (총 75곳)	668	391,558	14 (18.7%)	2 (2.7%)	39 (52.0%)

•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훈련방법 및 훈련일수 (주당, 합숙)

<표30> 2011학년도 특수학교 운동부 훈련방법 및 훈련일수

시도	특수학교명	운동부명	운동부 별 학생수	훈련 방법			주당 훈련 시간수			연간 합숙 훈련 일수 및 기간
				방과후 훈련	방과후 훈련 + 합숙 훈련	합숙 훈련	5시간 이내	5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20시간 이상	
서울	한국우진	보치아	6	√			√			
	다니엘	농구	25	√			√			
	밀알	밀알학교 운동부	12	√			√			
부산	부산맹	골볼	6	√				√		
	부산동암	싸이클	5	√				√		
인천	인천연일	역도	6	√			√			
	인천연일	태권도	18	√			√			
광주	은혜 학교	보치아	5	√				√		
대전	대전성세재 활 학교	체육	10	√				√		

시도	특수학교명	운동부명	운동부 별 학생수	훈련 방법			주당 훈련 시간수			연간 합숙 훈련 일수 및 기간
				방과후 훈련	방과후 훈련 + 합숙 훈련	합숙 훈련	5시간 이내	5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20시간 이상	
	대전원명	역도	10	√			√			
		육상	12	√			√			
		축구	15	√				√		
울산	메아리	역도	6	√				√		
		수영	5	√				√		
	울산혜인	볼링	6	√				√		
	태연학교	육상/사이클	22	√			√			
경기	성광학교	축구	25		√			√		5일(7.20~7.25)
	자운학교	풋살	14	√			√			
	자혜 학교	태권도	17	√			√			
		마라톤	5	√			√			
	경은학교	골프	2	√			√			
		육상	3	√			√			
	동현 학교	태권도	14	√			√			
		축구	18	√			√			
	성은학교	육상	2	√			√			
		운동특기	16		√				√	
	수원서광	풋살	8	√			√			
	에바다	탁구	13	√					√	
강원	춘천동원	농구	8	√				√		
		춘천계성	3	√			√			
	원주청원	태권도	5	√			√			
		역도	4	√				√		
	속초청해	육상	2	√				√		
		빙상	2			√		√		20일(장애인체육회주관실시)
태백미래학교	스키	2			√		√		20일(장애인체육회주관실시)	
	스키	6		√		√			40일(2011.12.27~2012.2.26.)	
충북	청주혜화학교	육상	8	√			√			
		역도	4		√		√			5일(8.9~8.13)
	청주성신학교	e-스포츠	4	√			√			
		육상	5	√					√	
	충주성심학교	빙상	4	√					√	
		육상	6		√			√		10일(7~8월 하계 방학 중)
		역도	4		√			√		10일(7~8월 하계 방학 중)
		유도	3		√			√		10일(7~8월 하계 방학 중)

시도	특수학교명	운동부명	운동부 별 학생수	훈련 방법			주당 훈련 시간수			연간 합숙 훈련 일수 및 기간
				방과후 훈련	방과후 훈련 + 합숙 훈련	합숙 훈련	5시간 이내	5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20시간 이상	
		빙상	4		√			√		14일(1~2월동계방학 중)
		스키	7		√			√		14일(1~2월동계방학 중)
		야구	25		√				√	39일(7~8월하계방학 중,1~2월동계방학중)
	총주성모학교	골볼	6	√				√		
	제천청암학교	사이클	4		√		√			6일(8.20~8.23, 9.17~9.19)
		역도	6		√		√			6일(8.20~8.23, 9.17~9.19)
		조정	7	√			√			
	꽃동네학교	역도	3		√		√			7일
충남	공주정명학교	축구, 실내조정	15		√			√		9일(2011.8.16.~8.29)
		육상트랙	3	√				√		
	천안인애학교	육상필드	3	√					√	
		실내조정	3	√					√	
		배드민턴	3	√					√	
		탁구	3	√					√	
	서산성봉학교	실내조정	3	√			√			
	아산성심학교	역도	8	√			√			
	보령정심 학교	육상	7	√					√	
		파크골프	2	√					√	
나사렛새꿈학 교	보치아	3	√			√				
전북	한울학교	육상	7	√			√			
	상희학교	탁구	6	√			√			
		육상	4	√			√			
	안동진명	배드민턴	15	√				√		
		육상 등	10	√				√		
	안동영명	육상	10	√				√		
		축구	15	√				√		
경북	구미혜당	육상	15	√				√		
		농구	16	√				√		
		역도	12	√				√		
	경북영광	축구	13		√			√		45일(4.11~4.23/5.11~5. .22 /8.8~8.17/12.26~2013. 1.9)
		역도	5		√			√		50일(5.11~5.22/8.8~8. 17/ 10.4~10.16/12.26~1.9)
	포항명도	역도	8	√				√		
경남	통영잠포	탁구	8	√			√			
합계	총 79개의 운동부		663	61 (77.22)	16 (20.25)	2 (2.53)	35 (44.30)	42 (53.16)	2 (2.53)	

2. 특수교육보조원 시간외근무 수당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수학여행, 야영, 운동회, 발표회 등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연장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강원 57.1%, 제주 44.7%, 전북 43.4%, 경북 35.7%, 경남 35.4%, 충북 30.9%, 부산 16.2%, 울산 14.5%, 경기 8.2%의 순으로 나타남.

2) 개선방안

- 특수교육보조원들에게 임금의 성격인 연장근로 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 필요.

3) 참고자료

(1) 특수교육보조원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지급내역

<표31> 특수교육보조원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지급내역

(단위 : 원, 명, %)

시도	특수교육보조원수	수학여행, 야영 등 정규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체험학습 동행보조원 수(A)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B)		야간근로수당지급 현황(C)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지급 합계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보조원	
			지급보조원 수	지급액	지급보조원 수	지급액	지급보조원 수(D)	지급액(원)	수(A-D)	비율(D/A)
서울	957	312	269	22,633,798	43	2,575,904	312	25,209,702	0	0
부산	510	253	195	13,845,084	23	1,340,462	212	14,891,352	41	16.2
인천	497	444	377	29,544,880	84	1,840,925	458	31,385,805	10	-3.2
광주	203	88	73	6,252,440	4	73,840	77	6,326,280	11	12.5
대전	426	163	140	12,525,620	23	847,470	163	14,985,690	0	14.5
울산	255	131	102	9,494,390	10	716,400	112	10,210,790	19	14.5
경기	807	342	299	28,078,704	15	734,750	314	28,438,134	34	8.2
강원	217	245	87	8,039,814	20	1,271,780	105	9,175,274	140	57.1
충북	367	165	108	9,817,510	6	688,470	114	10,505,980	54	30.9
세종	18	3	3	226,430			3	226,430	0	0
충남	291	79	64	4,977,242	19	1,147,888	83	6,125,130	2	-5.1
전북	391	182	89	4,016,155	14	534,680	103	4,550,835	80	43.4
경북	429	157	94	7,337,952	7	292,800	101	7,630,752	56	35.7
경남	471	376	225	15,266,285	18	1,367,630	243	16,736,285	123	35.4
제주	125	38	14	1,013,730	7	580,050	21	1,593,780	19	44.7
합계	5,964	2,978	2,139	173,070,034	293	14,013,049	2,421	187,992,219	589	20.3

※ A :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수학여행, 야영, 운동회, 발표회 등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보조하기위해 참여한 특수교육 보조원 수 기재(1명이 1회 이상 지원 했으면 1회를 1명으로, 2회를 2명으로 기재)

B, C :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지급액(단위: 명, 원)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④

2012 장애인 교육여건 현황 및 개선방안

펴낸이 : 국회의원 유은혜

만든이 : 국회의원 유은혜, 장애인교육권연대

펴낸날 : 2012. 10
